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6. 3. / (총 6매)	담당부서	급여기준과
과 장	김 혜 래	전 화	044-202-3140
담 당 자	황 상 철		044-202-314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6.4)

-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세부사항 (안 제2조의3 신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
 -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의3 신설)
 -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
 -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 구체적 규정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보호가 강화되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붙임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신규조문 대비표

붙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의3(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p>

<신 설>

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소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